

예림당아트홀 공연장 대관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AM컬처(이하 "AM"이라 한다)에서 운영 관리하는 예림당아트홀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촬영'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부대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대관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의 범위는 공연장의 기본시설로 한다.

제3조(대관신청)

- ① 대관은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수시대관은 당해년도 잔여일정 발생시 시행할 수 있다.
- ③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연장 대관신청서에 공연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공연장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수시대관 신청은 대관 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

제4조(대관신청제한)

공연장에서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관승인)

- ① 대관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혹은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무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②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공연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설비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연 30일전까지 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이 불가하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종료 당일 카드납부 혹은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연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공연장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 ① 공연장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점심(12:00~13:00), 저녁 (17:00~18:00) 휴게시간은 공연장과 협의하여 사용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공연 진행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사용시간
오전	9:00~12:00 (3시간)
오후	13:00~17:00 (4시간)
저녁	18:00~22:00 (4시간)
초과 시간당 400,000원(VAT별도)	

③ 대관기간 내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연이 없는 날이 발생하여도 1일 1회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단, 정기휴관일 제외)

④ 대관자가 신청한 시간 안에 셋업, 리허설, 철수가 모두 이뤄져야한다.

⑤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단, 금, 토, 일, 공휴일은 1일 2회의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기타 공연시간은 공연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⑥ 철야준비 및 철야철수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600,000원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공연 장르	대관료		
		1회 공연 (3시간 기준)	2회 공연 (7시간 기준)	3회 공연
공연대관	공연(연극, 뮤지컬)	1,500,000	2,000,000	2회기준 (+ 별도협의)
	콘서트(콘서트, 팬미팅)	2,000,000	3,000,000	2회기준 (+ 별도협의)
행사대관	행사, 촬영 등	시간당 500,000		

	대관료		
	오전(9시-12시)	오후(13시-17시)	저녁(18시-22시)
셋업/리허설/철수대관	300,000	400,000	500,000
행사 셋업/리허설/철수대관	시간당 400,000		

- ② 수시 대관자는 대관승인 통보 후 승인서에 적힌 기간 안에 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후 홍보 및 티켓 판매를 진행 할 수 있다.
- ③ 부대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예림당아트홀_부대설비사용신청서"와 같다
- ④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연장의 장비 및 시설을 파손시킬 경우 대관 책임자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 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공연일 전에 계약해지 시 대관료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해지시점/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이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1~29일	반환 안함	40%	50%	80%
30일 이상	반환 안함	60%	70%	80%

제8조(입장권의 발행)

- ①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공연장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발행한다.
- ②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의 발행은 공연장과 사전 협의하여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되,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 시 공연장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석 오픈의 경우 공연장과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 ④ 공연장은 운영 및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좌석을 유보하며, 사용자는 입장권 발매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발권해야한다.
 1. 1층 객석(총 4매) : D열 8번~11번
 2. 2층 객석(총 4매) : C열 8번~11번
- ⑤ 공연 당일 입장 연령이 제한된 아동 및 취소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공연진행)

-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공연장이 주최하는 종합 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또한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 2일전까지 공연장 해당부분 감독과 대관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공연장 감독과 대관담당자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하며, 공연법 제11조 4, 동법 시행령 제9조 4에 의거하여 공연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공연무대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해야한다.
- ④ 사용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일일주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시간 무료권은 별도로 지급 될 수 있다. 일일주차권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카드 6,600원)
- ⑥ 대관 시 진행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는 분리배출 해야하며, 폐기물은 공연팀에서 가져가야한다.
공연장내 음식물섭취가 불가하며, 간단한 간식등 섭취 후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공연팀에서 반출해야한다.
- ⑦ 공연 완료 후 객석과 무대는 공연팀에서 원상복구 한다.
(공연장 관리자에게 확인 후 철수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⑧ 보도자료 작성 시 '예림당아트홀'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예림당아트홀 소재지로 한다.

제11조(내규위반 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3조(규정 외 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의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 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관리규정은 폐지한다.